# Ⅴ. 결론

# Ⅴ. 결론

본 연구는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의 이용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자원남용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비교적 최근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었는데 이들 두 가지 발전 양식에 대한 과세를 기존의 분류대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간주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상존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두 가지 발전 양식을 기존의 수력발전과 함께 발전분으로 재편하고,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출발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서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른 발전 원천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현황과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에 속해 있는 수력발전용 발전용수에 대한 과세와 원자력 및 화력 발전에서의 발전량에 대한 과세를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발전 유형이 가진 특성의 공통점을 찾아 보았다. 세 가지 발전 유형의 공통점은 발전시설 자체 혹은 발전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차원의 과세근거로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분을 따로 만들고,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으로 구성한다. 발전분으로의 재편성과 함께 과세단위도 통일시켜 수력, 원자력, 화력 모두 발전량 단위로 과세한다. 수력발전을 발전용수 기준으로 과세할 때 과세하지 않았던 양수발전의 경우도 새로 과세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발전량 기준으로 과세하여 환경훼손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수력발전의 과세단위 변경으로 인한 세율 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세수입을 유지하는 수준의 세율로서 kW당 약 2.7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발전분 발전원천별 세율은 kW당 화력 0.3원, 원자력 1원, 수력 2.7원으로 제안하였다. 다만, 외부불경제의 크기와 수력발전 세율을 감안할 때 원자력과 화력발전의 세율은 향후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동향을 파악한 결과 세계적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개발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3.5%, 풍력이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화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이 82%로 워낙 크기 때문으로서 실질적인 의미의 신생에너지로서는 태양광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된다. 발전의 형태나 가능성 등의 면에서 볼 때, 향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할 만한 대상으로는 지열,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 등이 꼽혔다. 이들 에너지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적절한 과세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행정서비스를 발생시키고 그 편익을 받는가 여부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따져보고,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가의 여부,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을 해당 경제주체가 활용하는 경우인가 여부가 세 가지 기준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세율의 서열은 지열〈태양광〈풍력〈조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기존 에너지원에 위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화력〈수력〈원자력의 세율 서열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신규에너지 원에 대한 과세가 현행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의 검토를 시행했다. 기존의 에너지원들이 초래한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외부불경제의 해소방안으로서 둘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외부불경제의 영향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는 광역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해결책으로서 시행하고,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천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인한 수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적절한 규모로 배분하되, 해당 에너지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광역적일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분을 늘리고, 국지적일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여러 가지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고, 발전시설로 인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외부불경제의 해소비용과 행정서비스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라는 환경위기 극복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세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셰일오일 채굴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유가하락 등의 최근의 에너지 시장의 변혁 요인이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과

세로 인한 생산비 증가 효과가 최소화 되도록 낮은 세율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